

한경협

ESG Bulletin

2024. 11 | 제 9 호

K-ESG 얼라이언스 사무국에서는 회원서비스 강화와 ESG 저변 확대를 위해 한경협 ESG경영자문단이 ESG 핵심 이슈에 대해 꼭 짚어 설명드리는 'ESG Bulletin'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 新트럼프 시대 ESG 이슈 전망 및 기후공시 미국 동향

송재형 한국경제인협회 CSV팀 팀장

다가오는 新트럼프 시대 기후변화와 세제 관련하여 정책 방향에서 상당 부분 ESG 이슈의 후퇴가 예상된다. 新트럼프 행정부의 ESG 관련 정책(예상)은 바이든 행정부와 여러모로 대척점에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미국 내 기후공시 관련 주요 인사들의 입장과 SEC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공시규칙 제정 경과를 토대로 新트럼프 행정부의 ESG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을 예상해본다.

### < 바이든 행정부 vs 新 트럼프 행정부(예상) ESG 관련 정책 변화 >

| 바이든 행정부  | 新 트럼프 행정부(예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후변화 대응 적극 추진</li><li>·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li><li>· IRA 통한 청정에너지 기술 발전</li><li>· GSSA 협정 추진</li><li>· 인프라 및 청정에너지 재정 지출 확대</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화석연료 산업 부흥</li><li>· 원자력 발전 확대</li><li>· 파리 기후협정 재탈퇴</li><li>· 그린뉴딜 중단</li><li>· 화석에너지 재정 지출 확대</li></ul> |

## 1. 기후변화협약 재탈퇴 가능성 상승

新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협약의 재탈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취임 즉시 시행할 기후·에너지 관련 행정명령과 대통령 포고문을 마련하였으며,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6년 파리 협약을 비준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협약 탈퇴를 선언, 2019년 11월 탈퇴를 UN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첫 조치 중 하나로 파리협약에 재가입했으나, 이번 신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기후변화협약 재탈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 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규칙 철회 가능성

과거 트럼프 정부 SEC 위원장 등은 기후공시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현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교체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2025년 1월 20일)에 맞춰 사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SEC가 추진중이던 기후공시규칙에도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후임으로는 헤스퍼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 마크 우에다(Mark Uyeda) SEC 위원 등이 유력 거론되고 있다. 헤스퍼 피어스는 현 SEC 위원으로, SEC의 상장기업에 대한 ESG 관련 재무위험 공개규칙의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공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변화(fundamental changes)는 투자자, 경제전반, SEC 모두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박스 안 성명내용 참조)

### ● 기후공시 규칙 초안에 대한 헤스퍼 피어스 SEC 위원 성명 ●

(2022.3.21)

“우리는 증권환경위원회가 아닙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우리의 공시 체제(regime)에 대한 이러한 근본적 변화(시도)는 투자자, 경제 전반, SEC 모두에 피해(harm)를 끼칠 것이 자명하다. 아래 제시하는 사항들이 없다는 점에서 나는 공시규칙 초안(proposal)에 반대한다.

### ① 그런 권위적인 기후공시 프레임워크를 마련한 데 대한 신뢰할 만한 근거 없음

→ 기존의 규범들로도 이미 중요한 기후 위기를 커버할 수 있다고 주장

- \* 기존규범 예시: Regulation S-K(기업공시규제) 303조(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of Financial Conditions and Results of Operations), 101조(Description of Business), 103조(Legal Proceedings), 105조(Risk Factors); 증권법규칙(Securities Act Rule) 408저, 외환법규칙(Exchange Act Rule) 12b-20, 기후변화 공시 관련 위원회(SEC) 가이드스(2010년)

### ② 중대성(기준)의 범위(limitation) 미비

→ 미래 기후변화의 잠재적인 결과에 대한 현재의 중대성 평가가 어려울 것이란 것을 기후공시 초안도 인정하고 있는데, (모순되게도) 기후 컨설팅 회사들이 중대성 평가값을 확정하는 것을 지원(assist)하도록 하는 것에는 또 두려움이 없다고 지적. 기후 산업 집단(climate industrial complex)이라고 비판

### ③ 이 규칙이 어떻게 비교가능하고, 일관되며, 신뢰할만한 공시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compelling) 설명 미비

→ 공시규칙은 해당 기업의 정보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공급업체, 고객, 직원, 기후 정책, 규제, 기술혁신, 날씨 패턴 변화 등 광범위한 분야 정보를 요구. 관련 필수 데이터들이 상당 부분 신뢰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정량화(quantification)가 명확성(clarity)으로 이어진다는 가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 물리적 위험 측정 등에 가정과 추정을 사용하는 것도 신뢰성에 문제 내재

### ④ 규칙(을 SEC가 마련한 것)에 대한 적절한 법률상(법적) 근거 없음(권한 남용)

→ SEC는 의회가 부여한 권한 이내에서 규칙 등을 제정해야 하며, 해당 공시는 수정헌법 1조(언론/표현의 자유)에 따른 권한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

### ⑤ 기업에 초래할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치 없음

→ 자발적 공시에서 의무화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책임의 수준, 광범위한 조사, 컨설팅, 인증, 감사 등에 수반되는 비용 추정이 미흡함을 지적

### ⑥ 투자자, 경제, SEC에 초래할 결과에 대한 계산(추정치) 미비

→ 경영자 입장에서 재무성과가 나빠도 기후 분야를 잘했으니 좋은 평가를 해달라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논리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 경영진이 재무성과에 덜 집중하고 기후 등 다른 분야에 집중한다면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

\* “Dear Shareholders, we fell far short of our earnings target this year, but you will be pleased to know that all in all it was a fantastic year since we made great progress on our climate transition plan.” 라고 표현

→ SEC의 변호사, 회계사,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처해야할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는 건데, 정말 사회가 큰 곤경에 빠질 수 있음

→ 불필요한 분야에 자산 거품을 야기하고, 이런 분야로의 자본 이전은 경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경제 전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음

→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정보(기후공시)를 SEC에 제출하면 이러한 중요한 제출 자료의 나머지 정보에 대한 신뢰성까지 떨어지게 하고, 불필요한 소송 등 분쟁에 휘말리게 해 결국 SEC 평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또 다른 유력 후보인 마크 우에다(Mark Uyeda) SEC 위원은 ESG 관련 위험공시규칙을 채택할 경우 SEC는 길을 잃어버릴 것(gone astray)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트럼프 행정부, 2017~2020)은 SEC가 기업에 기후공시를 얼마나 강제할 것인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후정보 공시 규칙과 관련해 SEC의 역할이 법적 권한과 전문분야에 머물러야 하며, SEC가 동 규칙 입안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의회 또는 환경청 권한이라는 인식)인 의견이다. 트로이 파레데스(Troy Paredes) 前 SEC 위원장(부시 Jr.~오바마, 2008~2013)은 SEC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 얼마나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특히 기후공시 규칙이 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맨친(Joseph Manchin) 상원 에너지자원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SEC 기후공시가 기업들, 특히 화석연료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2022년 4월 4일, 조 맨친 의원은 SEC 개리 겐슬러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해당 SEC 규칙’이 상장회사 재정건전성·준법 평가 절차를 정치화한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SEC가 다른 공시 요건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기업들에 위 규칙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Scope3 공시 강제를 지적했다. 데이비드 조이스(David Joyce) 하원 의원(공화당)은 환경 및 사회 관련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규칙이 기업에 부담을 지우고 ‘정보 과부하’로 투자자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3. SEC 기후공시규칙(Rules to Enhance and Standardize Climate-Related Disclosure for Investors) 소송 동향

현재 소송중인 기후공시규칙과 관련해, 새로운 SEC 위원장 선임 등 리더십 변경 시 SEC의 변론 포기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원이 SEC의 권한남용을 인정할 경우, 기후공시는 의회를 통해 법안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현재 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인만큼 통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 SEC 기후공시규칙 관련 소송 경과 >

| 시기         | 내용  |
|------------|---|
| 2021.3월    | 기후 공시 규칙 초안에 대한 기업 의견 수렴 시작   |
| 2022.3월    | 기후공시규칙 초안 발표  |
| 2022.5월 ~  | 2022년 말 최종안 의결 예정이었으나, 산업계·공화당 반대로 의결 연기  |
| 2023.11월   | 기후공시규칙 최종안 발표(초안대비 대폭 완화, 2026부터 단계적 시행)  |
| 2024.3.6.  | 통과(5인 중 3인 찬성)→ 공화당·기업·환경단체 등 반발과 소송 이어짐  |
| 2024.3.15. | 법원이 SEC 기후공시규칙 시행 유예 결정   |
| 2024.4.4.  | SEC는 소송 기간 동안 기후공시규칙 잠정 중지 발표, 제8연방순회항소법원, 기후 규칙 효력 일시 중지   |
| 2024.4.10. | 하원 공화당은 SEC규칙 무효화 공동 결의안발의 (H.J.Res.127)  |
| 2024.6.24. | SEC 기후공시규칙에 대한 소송 청원인 쪽의 서면 의견 제출<br>▶ SEC 규칙은 SEC의 법적 권한을 초과한 것<br>▶ 준수에 따른 광범위한 의무/비용을 정당화할 충분한 근거/설명 未제공 |
| 2024.8.15. | 소송 응답인(SEC) 측 서면 의견 제출 cf. SEC 답변   |
| 2024.9.3.  | 청원인 측 최종답변 제출   |

### 4. 시사점

우리나라도 현재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지속가능성공시기준안 초안이 마련되었고, 이를 검토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新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내년 미국의 기후공시 관련 정책 방향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는 등 국제 정세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급하게 지속가능성공시 국내 기준을 도입하기보다는 미국 등 국제동향을 보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고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